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8, No. 108, pp.199-234
<https://doi.org/10.29212/mh.2018..108.6>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북한 해양경비부대의 창설과정 연구

: 해군의 기원과 초기 간부를 중심으로

김선호*

1. 머리말
2. 수상경비대·수상보안대의 창설과 주요활동
3. 수상보안대·수상보안대대의 간부구성과 간부양성
4. 해양경비부대의 지휘체계와 소련군·내무국·검찰소의 갈등
5. 맺음말

1. 머리말

해방 직후 한반도의 각 지역에는 자생적으로 무장단체들이 조직되었다. 이들은 일본경찰이 철수한 치안공백을 채우면서 자체적으로 고향의 치안을 유지하였다. 남과 북의 정치세력들은 이 무장단체들을 향후 군대의 모체로 육성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미국과 소련도 향후 독립

* 인천가톨릭대학교 강사

국가 수립에 대비해 은밀히 무력 건설을 추진하였다. 해방 직후 북한지역에도 다양한 무장세력이 창설되었다. 그중 북한의 각 해안지역에는 자체적으로 ‘수상보안대’가 조직되었다.¹⁾ 북한의 정치세력과 소련군에게 치안유지는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였다. 이들은 효과적인 치안유지를 위해 무장세력을 재편하였다. 수상보안대는 시기별로 몇 차례 재편되면서 점차 정규군대로 육성되었다. 이 수상보안대가 조선인민군 해군의 모체이다.

국군 해군도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 1945년 8월 21일 해군출신 손원일(孫元一)과 정공모(鄭兢謨)는 자체적으로 해사대(海事隊)라는 무장단체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해안경비와 해양발전에 목표를 둔 군사단체를 편성하기 위해 9월 30일 조선해사협회(朝鮮海事協會)를 창설하였다. 조선해사협회는 미군정청에 해사국이 설치되자 미군정과 협의를 거친 후, 11월 11일 약 200명 규모의 해방병단(海防兵團)을 창설하였다. 이 해방병단을 모체로 국군 해군이 창설되었다.²⁾ 남과 북의 해군은 모두 자생적인 무장단체로 출발해 정치세력과 점령당국에 의해 점차 정규군으로 발전하였다.

북한 해양경비부대³⁾의 창설과정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국방부에서 선도해 왔다. 대부분 6·25전쟁 연구의 전사(前史)로서 인민군의 창설과정을 연구한 것이다. 국방부는 해양경비부대의 변화과정과 무기 현황 등 창설과정의 기초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냈다.⁴⁾ 1990년대 이후부터는 민간연구자들에 의해 해양경비부대의 변화과정과 간부

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694쪽.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352~353쪽.

3) 이 글에서 ‘해양경비부대’라는 용어는 북한 해군이 공식적으로 창설되기 이전에 해양 지역을 경비하기 위해 조직된 수상경비대, 수상보안대, 수상보안대대를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4) 국방부의 연구성과는 다음 문헌을 참고바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창군전사』, 육군본부, 1979; 해군본부, 『해군작전사개설』 1집, 해군본부, 200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충원 등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다.⁵⁾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해양경비부대의 창설과정은 다음과 같다. 1945년 10월에 처음으로 수상보안대가 조직되었고, 1946년 후반 동해수상보안대와 서해수상보안대로 확대되었다고 알려졌다. 반면에 1946년 12월 수상보안대가 해안경비대로 개칭되었다는 연구도 있다.⁶⁾ 동해수상보안대와 서해수상보안대는 1946년 12월 12일 원산위수사령부, 진남포위수사령부로 개칭되었고, 청진위수사령부가 신설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북한 해양경비부대의 창설과정은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부터 논란이 많다. 해양경비부대의 명칭만 보더라도 선행연구마다 각각 “수상보안대”, “해안경비대”, “수상보안대대” 등의 명칭이 혼용되고 있다. 해양경비부대의 상급기관에 대해서도 “위수사령부”나 “수상보안대사령부”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료적 근거가 없다. 또한 해양경비부대의 개편시기도 연구마다 다르다. 해양경비부대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편차가 큰 것은 이 부대가 독립적인 주제로 연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글의 목적은 북한 해양경비부대의 창설과정을 역사사실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북한군 연구가 연구사적 쟁점을 형성하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밝히려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방 직후 해양경비부대의 창설과정과 주요활동을 밝힐 것이다. 특히 현재까지 논란이 많은 해양경비부대의 명칭과 조직체계의 변화과정을 사실적

5)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서문당, 1991, 34~37; 45~47쪽; 최완규, 「조선인민군의 형성과 발전」, 『북한체제의 수립과정』,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1, 139~176쪽; 김용현, 「북한인민군대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1994, 33~62쪽; 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 1, 선인, 2003, 573쪽; 김광수, 「한국전쟁 초기 북한군의 지휘구조와 후방부대 편성」, 『육사논문집』 59집, 육군사관학교, 2003, 37~77쪽; 김광수,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수행 연구』, 경남대 북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65; 74~75쪽.

6) 김광운, 앞의 책, 573쪽.

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해양경비부대의 간부구성을 분석하고, 간부들의 양성기관과 양성과정을 밝힐 것이다. 셋째, 해양경비부대의 지휘체계를 밝히고, 지휘체계를 둘러싼 소련군·내무국·검찰소의 갈등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 글은 이상의 문제의식을 밝히기 위해 새로 발굴하거나 『북한관계사료집』에 수록된 미군노획문서(U.S. NARA collection of the seized documents in the Korean War)와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에서 1946~1948년 주한미군 정보참모부의 정보보고서를 모아 영인한 『주한미군북한정보요약(Intelligence Summary Northern Korea)』을 활용하였다. 이 글은 미군노획문서 중에서 주로 북조선 인민위원회 내무국 보안처에서 생산한 비밀문서를 활용하였다. 주요 자료는 「보안처 회의관계서류」, 「1947년 사업관계서류」, 「1948년 사업관계서류」이다.

2. 수상경비대·수상보안대의 창설과 주요활동

해방 직후 북한지역에는 자체적으로 지방의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무장단체들이 조직되었다. 1945년 10월 12일 소련극동군 제25군 사령관 치스차코프(Чистяков)는 북한지역에서 모든 무장단체의 해산과 무장해제를 지시했다. 그리고 소련군 경무사령부와 협의 하에 도인민위원회 산하에 보안대를 조직하라고 지시했다.⁷⁾ 이에 따라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1945년 11월 초순 북조선행정10국의 수립과 함께 치안대·자위대·적위대를 해산하고 “인민보안부·인민보안서”로 재편성하였다. 그리고 “보안기관들을 유기적이며 통

7) 朝鮮中央通信社, 『朝鮮中央年鑑(1949年版)』, 朝鮮中央通信社, 1949, 58쪽.

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북조선행정10국 중 하나로 보안국을 창설하였다.⁸⁾ 이 시기까지 북한의 무장세력은 경찰수준이었다. 북한정치세력이 보안대 창설에 머문 이유는 미·소 합의에 의한 임시정부 수립 이전까지 정규군을 창설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⁹⁾ 소련의 입장에서 미·소 합의에 의한 한반도문제 해결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본격적인 무력양성을 허가하기 어려웠다.¹⁰⁾

북한정치세력¹¹⁾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무력 창설을 준비하였다. 첫째, 정규군의 기간이 될 군사간부 양성을 추진하였다. 이들은 고급군관양성기관으로 1946년 1월 3일 평양학원을, 초급군관양성기관으로 1946년 7월 8일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를 창설하였다.¹²⁾ 둘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산하에 보안국을 조직하고 육·해·공군의 모체가 되는 보안기구를 육성하였다. 1945년 말부터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보안간부훈련소, 38경비보안대, 조·만 국경경비대, 철도경비대, 수상경비대를 조직하여 보안국이 관할하도록 하였다.¹³⁾ 이들은 소련이 정규군 창설을 허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군관양성기관과 각종 보안무력을 조직해 군사간부와 병력을 먼저 육성하려고 계획했다.

북한정치세력은 해방 직후부터 서해안과 동해안을 경비하기 위해 해양경비부대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육지에 보안대가 창설

8) 北朝鮮人民保安局, 『北朝鮮保安事業總結報告』, 北朝鮮人民保安局, 1946.11.19, NARA, RG 242, SA 2010, Box 미상, Item 150.

9) 김광운, 앞의 책, 571쪽.

10) 기광서, 「북한 무력 형성과 북소관계」, 『中蘇研究』 28권 3호,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2004, 219쪽.

11) 이 글에서 ‘북한정치세력’이라는 용어는 국내에서 활동해온 공산주의자, 동북항일 연군출신, 조선독립동맹·조선의용군출신, 소련에서 온 고려인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각 정치세력은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투쟁했지만, 북한지역에 독자적 무력을 건설한다는 건군방향에 합의하고 있었다.

12) 김광운, 앞의 책, 472~479쪽.

13) 김선호, 「해방직후 북한 보안국의 조직과 활동」, 『역사와현실』 86호, 한국역사연구회, 2012, 306~307쪽.

되는 과정에서 각 해안지대에는 “수상보안대”가 조직되었다고 알려져 있다.¹⁴⁾ 그러나 보안국의 회의기록에 따르면,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보안국 경비부 수상과는 1946년 7월 3일 현재 동해안과 서해안에 “수상경비대”를 배치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었다.¹⁵⁾ 이날 회의에서 보안국의 소련군 고문 자구루진(Загрузин) 대좌는 수상경비대의 조직사업에 대해 “서해안만이라도 단기일내에 조직이 완료되어 실무를 보게 된 것도 큰 성과”라고 평가하였다.¹⁶⁾ 또한 7월 16일 평안북도 보안부 감찰과장은 보안국에 수상경비대를 설치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보안국장 최용건(崔庸健)은 ‘금후(今後) 설치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¹⁷⁾

보안국은 1946년 7월 3일 시점에 수상경비대를 창설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북한지역의 해양경비부대는 가장 먼저 6월에 서해 수상경비대가 창설되었다. 서해수상경비대는 황해도와 평안남도지역에 먼저 조직되었고 그 후 평안북도지역에 조직되었다. 동해수상경비대는 서해수상경비대가 조직된 이후인 7~8월에 창설되었다. 정확한 해양경비부대의 명칭도 수상보안대가 아니라 “수상경비대”였다. 북한정치세력이 서해안과 동해안지역 중에서 먼저 서해안에 수상경비대를 조직한 이유는 당시 남한에서 북파한 첩보요원들이 주로 서해안을 통해 침투했기 때문이다.¹⁸⁾

북한에서 사후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조선임시인민위원장 김일성(金日成)은 1946년 6월 5일 보안국장 최용건에게 수상경비대를

1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694쪽.

15) 「제2회 각도 보안부장회의록」(1946.7.3),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9권, 국사편찬위원회, 1990, 237쪽.

16) 「제2회 각도 보안부장회의록」(1946.7.3), 국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251쪽.

17) 「제1회 각도 보안부 감찰과장회의록」(1946.7.16), 국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273~274쪽.

18) 김일성, 「수상보안대를 조직할데 대하여」(1946.6.5), 『김일성전집』 3권,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2, 461쪽. 수상경비대는 1949년 9월경에 수상보안대로 개칭되었는데, 이 연설문 제목에는 개칭된 명칭이 사용되었다.

조직하되, 먼저 서해수상경비대를 조직하라고 지시하였다. 창설에 필요한 인원과 선박은 당시 평안남도 남포에 파견된 공작원 김경석(金京石)과 협조해 해결하라고 지시하였다. 서해수상경비대의 본부는 남포에 설치되었고, 예하부대는 용암포, 남포, 몽금포, 구미포, 신미도 등 서해안의 중요지역에 설치되었다. 수상경비대원은 배를 타본 경험이 있는 노동자·농민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선발하였다. 수상경비대에 필요한 경비선은 지방에 있는 발동선을 모아 충당하였다.¹⁹⁾ 주한미군은 첩보요원들과 월남민들을 통해 북한 해양경비부대의 창설 상황을 일부나마 파악하고 있었다. 정보참모부는 창설 시기와 창설지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수상경비대가 1946년 초에 평안남도 진남포 인근에서 창설되었고, 9월까지 조직을 확장했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당시 수상경비대원의 모병 임무는 보안간부훈련소가 담당했다.²⁰⁾

그런데 수상경비대의 명칭은 창설 직후에 변경되었다. 1946년 11월 19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보안국은 1년간 사업을 총결하면서 “동서양해안(東西兩海岸) 수상보안대(水上保安隊)를 조직”하였다고 보고하였다.²¹⁾ 총결보고를 보면, 명칭이 “수상보안대”로 변경되었다. 그렇다면 명칭이 바뀐 시점은 언제일까? 여기서 철도경비대의 조직 변화를 참고할 수 있다. 북한정치세력은 1946년 1월 5일에 철도경비대를 창설했는데, 이 부대의 명칭은 1946년 9월부터 “철도보안대”로 변경되었다.²²⁾ 아마도 비슷한 시기인 9월에 수상경비대도 수상보안대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명칭을 변경한 이유는 임시인민위원회에서 무력과 관련된 기관의 명칭이 ‘보안국, 보안부, 보안서’ 등

19) 김일성, 앞의 책, 461쪽.

20) USAFIK, G-2, ISNK, No.39(1947.6.15~6.30),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주한미군북한정보요약』 2,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89, 218쪽.

21) 北朝鮮人民保安局, 앞의 자료.

22) 北朝鮮人民保安局, 앞의 자료.

으로 통일되었기 때문이다. 수상보안대 예하에는 수상보안지대가 설치되었다. 동해수상보안대 예하에 7개의 수상보안지대가 설치되었고, 서해수상보안대 예하에 8개의 수상보안지대가 설치되었다.²³⁾

소련군사령부와 북한정치세력이 1946년 7~8월 시점에 2개 수상 경비대를 창설한 것은 남한의 해안경비대 창설에 대한 대응의 성격이 강했다. 남한에서는 손원일·정공모 등 해군경력자들이 조직한 조선해사협회의 주도로 1945년 11월 11일 해방병단이 창설되었다.²⁴⁾ 해방병단은 법적으로 승인된 것은 아니지만, 미군정으로부터 사실상 해안경비대로 인정받았다. 1946년 1월 15일에는 진해기지에 해방병단총사령부가 설치되었고, 1월 17일에는 해군병학교가 신설되었다. 해방병단은 1946년 6월 15일 군정법령 제86호에 따라 공식적으로 조선해안경비대(朝鮮海岸警備隊)로 개편되었고, 미군정 국방부의 조선해안경비국이 관할하게 되었다. 해방병단총사령부는 조선해안경비대총사령부로 개칭되었고, 해안경비대총사령부는 부산·목호·목포·인천기지, 제1정대(艇隊), 조선해안경비대사관학교, 하사관교육대, 신병교육대를 보유하고 있었다.²⁵⁾

1946년 6월 중순에 이미 남한지역에는 조선해안경비대와 조선해안경비대총사령부가 창설되었다. 이와 함께 해군의 장교·하사관·병사를 양성하는 군사학교도 설치되었고, 4개 해안기지와 1개 함정 부대가 조직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남한의 해안경비대는 미군정 국방부 조선해안경비국이 직접 관할하였고, 해안경비대를 총괄 지휘하는 해안경비대총사령부도 조직되어 있었다. 소련군사령부와 북한정치세력은 미군정이 남한에 해안경비대를 창설하자 이에 대응해 북한의 해안지역을 방어하는 해양경비부대를 창설한 것이다.

북한지역보다 남한지역에서 먼저 해안경비대가 창설된 것은 해방

2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694쪽.

24) 「國軍은 이렇게 자랐다」, 『동아일보』, 1961.10.1(2면).

25) 백기인, 『建軍史』,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189~196쪽.

전에 한반도에 배치된 일본 해군의 주둔상황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종전 당시 한반도 주재 일본 해군의 병력은 남한에 29,476명, 북한에 2,690명으로 병력의 91%가 남한에 주둔하고 있었다. 게다가 한반도 주둔 일본 해군의 최고지휘기관인 진해경비부(鎭海警備部)도 남한에 있었다. 종전 당시 남한지역에는 진해경비부사령부, 진해해병단, 진해방비대, 진해연합특별육전대사령부, 제1·제2특별육전대, ‘조선항공대’, 진해통신대, 설영대(設營隊), 항만경비대, 회천(回天)·교룡(蛟龍)기지가 설치되어 있었다. 반면에 북한지역에는 원산특별근거지대사령부, 해군항공창, 해군연료창, 진해연합특별육전대·진해방비대 파견대, 원산통신대, 항공파견대, 설영대, 항만경비대가 설치되어 있었다.²⁶⁾ 해방 당시 해군의 사령부와 해군부대의 주력, 해군기지는 모두 남한지역에 있었다. 미군정은 이 같은 일본 해군의 시설과 병력을 기반으로 북한보다 먼저 해안경비대를 창설할 수 있었다.

북한의 수상경비대는 남한의 해안경비대와 달리 수상경비대만을 지휘하는 별도의 사령부가 조직되지 않았다. 선행연구는 1946년 12월 12일 원산의 동해수상보안대와 진남포의 서해수상보안대가 원산 위수사령부, 진남포위수사령부로 개칭되었고, 청진위수사령부가 신설되었다고 보고 있다.²⁷⁾ 그러나 1947년 초까지 생산된 내무국의 문서를 살펴보면, 위수사령부라는 명칭은 등장하지 않는다. 내무국 문서에는 계속해서 “동해수상보안대”와 “서해수상보안대”라는 2개 명칭만 등장한다.²⁸⁾ 또한 선행연구는 수상경비대의 지휘기관에 대해 1946년 7월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수상보안대사령부를 원산

26) 임종국, 『日本軍의 朝鮮侵略史』 2, 일월서각, 1989, 133~134쪽.

2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694쪽.

28) 박일우, 「문서취급에 관한 지시」 (1947.4.3), 국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78~79쪽; 「제2회 각도 및 특별시·철도·수상 감찰과장회의록(이하 제2회 감찰과장회의록)」 (1947.12.21),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83쪽.

에 설치하였고, 1946년 8월에 이전했다고 보고 있다.²⁹⁾ 그러나 수상보안대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보안국에서 직접 관할하는 부대였다.³⁰⁾ 이처럼 해양경비부대의 역사가 부정확한 것은 주한미군이 수집한 정보의 오류도 있었지만, 보안무력을 관할하는 보안국의 내부사정도 큰 영향을 끼쳤다. 북한 보안국의 기구와 조직은 보안국이 창설된 1945년 11월 19일부터 서해수상경비대가 창설된 1946년 7월까지 모두 여섯 차례나 변경되었다.³¹⁾

수상보안대가 수상보안대대로 증편된 시기는 1947년 4월이다. 동해수상보안대와 서해수상보안대는 이 시기에 각각 대대 규모로 증편되었다.³²⁾ 1947년 10월 7일 현재 서해안 해양경비부대의 정식명칭은 “서해수상보안대대”였다.³³⁾ 해양경비부대가 대대로 증편되면서 예하부대의 명칭이 ‘수상보안대’로 변경되었다. 예를 들어, 몽금포수상보안중대의 정식 명칭은 “몽금포수상보안대”였다. 수상보안대의 부대규모는 중대급이었다. 1947년 10월 5일 현재 서해수상보안대대는 남포(평남)·몽금포(황해도)·구미포(황해도)·해주(황해도)수상보안대 등 총 4개 중대를 두고 있었다. 또한 부대의 약칭도 있었는데, 서해수상보안대대는 “서해대대(西海大隊)”, 수상보안대는 각각 “남포대(南浦隊)·몽금포대(夢金浦隊)·구미포대(九味浦隊)·해주대(海州隊)”로 불렸다.³⁴⁾ 수상보안대 예하에는 “과견대”가 조직되었다. 그런데 해주수상보안대는 1947년 5월 과견대로 처음 발족하였다가 9월에

2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694쪽.

30) 「제2회 각도 보안부장회의록」(1946.7.3), 국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230쪽.

31) 「제2회 각도 보안부장회의록」(1946.7.3), 국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230~231쪽.

32) 기광서, 앞의 논문, 225쪽.

33) 서해수상보안대대장 장지복, 「중국선박 영흥리호 적재품 불법몰수의 전말보고서(이하 영흥리호 전말보고서)」(1947.10.7),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409쪽.

34) 서해수상보안대대장 장지복, 「영흥리호 전말보고서」(1947.10.7),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410쪽; 내무국 보안처 감찰부, 「서해수상보안대대 각중대 감찰관계사업 검열총결 보고의 건(이하 서해수상보안대대 검열보고)」(1947.11.24),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410~414쪽.

수상보안대로 승격하였다.³⁵⁾ 즉, 파견대는 일정시기 이후 수상보안대로 승격되기도 하였다. 수상과출소가 관할지역의 해상치안을 담당하는 하부기구였다면, 파견대는 주요 해안경비지역에 배치된 수상보안대의 직할부대였다.

주한미군 정보보고서에는 1947년 5월 상순 현재 수상보안대대의 예하부대와 병력에 대한 보고가 들어 있다. 정보참모부는 당시 수상보안부대의 부대단위를 연대로 보았고, 총 9개 연대가 편성되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 수상보안대는 2개 대대였고, 예하부대는 중대였다. 정보참모부가 연대로 분석한 부대는 수상보안대대의 중대에 해당한다. 이를 적용해 수상보안대대의 예하부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중대는 평남 진남포, 2중대는 함북 청진, 3중대는 함북 나진시 나진동, 4중대는 함남 함흥, 5중대는 황해도 해주, 6중대는 함남 원산, 7중대는 황해도 해주시 용당포, 8·9중대는 황해도 용연군 구미포에 주둔하고 있었다. 진남포의 1중대, 해주의 5중대, 용당포의 7중대, 구미포의 8·9중대는 서해수상보안대대의 예하부대다. 청진의 2중대, 나진의 3중대, 함흥의 4중대, 원산의 6중대는 동해수상보안대대의 예하부대다.³⁶⁾

수상보안대대의 중심업무는 해양경비업무였다. 수상보안대대가 취급하는 업무는 해안경비에 관한 사항, 해저통신 및 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항행(航行)선박 보호에 관한 사항, 어선 보호 및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해상검역 협조에 관한 사항, 난파선 구조에 관한 사항, 밀항선 및 밀항인 단속에 관한 사항 등이었다.³⁷⁾ 1946년 11월 19일 보안국은 1년간 사업을 총결 보고하면서 “동서 양해안 보안대를

35) 내무국 보안처 감찰부, 「서해수상보안대대 검열보고」 (1947.11.24),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412쪽.

36) USAFIK, G-2, ISNK, No.36(1947.5.1~5.15),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앞의 책, 48쪽.

37) 「북조선인민위원회 내무국 기구 및 사무분장」, 국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69~70쪽; 「제2회 감찰과장회의록」 (1947.12.21), 국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292쪽.

조직하여 해상으로 잠입하는 반동분자와 모리간상배 등 경제혼란자들의 준동을 봉쇄하였다”고 자평하였다.³⁸⁾

특히 수상보안대대는 해양의 경계를 넘어오는 선박과 직접 전투를 벌였으며, 해상으로 월남하는 월남자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 서해수상보안대대 예하 몽금포수상보안대에서는 1947년 11월에 해안경비선을 침범해 들어오는 월경선박과 수차례에 걸쳐 해상전투를 벌였다.³⁹⁾ 또한 해주수상보안대의 관할구역은 38선과 310미터 밖에 떨어져있지 않아 남쪽에서 조류를 타고 월경하는 선박이 많았다. 해주수상보안대는 이들을 38선 이남까지 추격하여 남한 경찰들과 총격전을 벌여 체포해 돌아왔다.⁴⁰⁾

남포수상보안대는 1947년 10월 31일 남포시 주민 김영춘 외 10명이 목선을 타고 월남하려던 것을 체포하여 서해수상보안대대에 보고하였다. 수상보안대의 관할구역에서는 일상적으로 해상을 통한 침투사건과 월남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수상보안대는 이와 관련한 보고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수상보안대가 침투·월남사건을 취급한 결과, 물품을 압수했을 경우에는 「압수결정서」·「압수품목록」·「외압수자명부」를 각각 1통씩 작성해 수상보안대대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⁴¹⁾

수상보안대대는 주업무인 해양경비업무 이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국내외로 수출입하는 밀수물자 단속업무, 경제범 단속업무, 밀항선 단속업무 등 해상단속업무도 수상보안대대의 중요한 업무였다.⁴²⁾ 한편, 수상보안대대가 북한지역의 넓은 해안선을 모두

38) 北朝鮮人民保安局, 앞의 자료.

39) 내무국 보안처 감찰부, 「서해수상보안대대 검열보고」(1947.11.24), 국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411쪽.

40) 내무국 보안처 감찰부, 「서해수상보안대대 검열보고」(1947.11.24), 국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412~413쪽.

41) 西水保大 南浦隊長, 「압수품결정서 보고의 건」(1947.11.10), 국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415~418쪽.

관할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해양경비업무에는 현지 주민들도 투입되었다. 도인민위원회 보안부는 해양경비에 투입된 주민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보증하기 위해 별도의 신분증을 발급하였다. 1946년 7월 16일 황해도 보안부 감찰과장의 보고에 따르면, 황해도인민위원회 보안부는 주민들에게 “해안선경비인민증”을 발급해 해안선 경계업무를 맡겼다.⁴³⁾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방 직후 소련군사령부와 북한정치세력은 서해안과 동해안을 경비하기 위해 수상경비대를 조직하였다. 서해수상경비대는 1946년 6월에 조직되었고, 동해수상경비대는 7~8월에 조직되었다. 수상경비대는 9월경 서해수상보안대·동해수상보안대로 개칭되었고, 예하에는 수상보안지대가 설치되었다. 창설 초기에 수상보안대를 지휘한 상급기관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보안국이다. 2개 수상보안대는 1947년 4월에 각각 수상보안대대로 개칭·증편되었고, 예하 수상보안지대는 중대급의 수상보안대로 개칭·증편되었다. 소련군사령부와 북한정치세력은 처음부터 중앙행정기관을 통해 해양경비부대를 관할하였다.

3. 수상보안대·수상보안대대의 간부구성과 간부양성

현재까지 북한의 해양경비부대에서 활동한 군사간부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각종 자료를 종합해보면 해양경비부대의 일부 지휘관을 확인할 수 있다. 제1대 동해수상보안대 대장은 진국화(陳國華)다. 그는 평안도 출신으로 1935년 의열단이 세운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졸업했다. 1938년 5월에는 중앙육군군관학교 성자강릉

42) 「제2회 감찰과장회의록」 (1947.12.21), 국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292쪽.

43) 「제1회 각도 보안부 감찰과장회의록」 (1946.7.16), 국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269쪽.

분교를 졸업했다. 그해 10월에 조선의용대에 입대했고, 1939년에는 호남성 북부 최전선에서 항일선전활동을 전개했다. 1943년 9월부터 조선의용군 기동부대에서 선전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해방 직후 만주로 진출했다가 1945년 말 조선의용군 1진으로 입북해 동해수상보안대대장을 맡았다.⁴⁴⁾ 1대 동해수상보안대대 대대장은 최인석(Choi, In-Suk)이었다. 그는 1947년 6월 말 당시 이 직책을 맡고 있었다. 동해수상보안대대 고문은 소련군 티막(Тимак) 중위였다.⁴⁵⁾ 2대 동해수상보안대대 대대장은 최덕주(Choi, Duk-Chu)였고, 그는 1947년 10월 30일 현재 재직 중이었다.⁴⁶⁾ 최인석과 최덕주의 경력은 알 수 없다.

제1대 서해수상보안대 대장은 이철중(李鐵重)이다. 그는 서해안에서 해안경비임무를 수행하던 도중 1946년 11월 20일 이전에 순직하였다.⁴⁷⁾ 이철중은 1914년 경기도 인천에서 태어났으며, 중국으로 건너가 1934년 9월 남경 육군군관학교 제11기 기병과에 입학했다. 1937년 12월부터 중앙육군군관학교 성자강릉분교 한인반에서 견습사관으로 군사교육을 담당했다. 그해 10월 조선의용대 제2구대에 입대했고, 연안으로 가서 항일군정대학을 졸업했다. 1941년 1월 화북조선청년연합회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1942년에 조선의용대 분대장으로 반소탕전에 참전했다. 그후 팔로군 제129사단 제1여단에서 근무했고, 북경에 파견되어 지하공작을 전개했다.⁴⁸⁾

제1대 서해수상보안대대 대대장은 1947년 5월 15일 당시 차영도

44)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명지출판사, 2000, 125~126쪽; 강만길·성대경 편, 『사회주의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1996, 477쪽.

45) USAFIK, G-2, ISNK, No.39(1947.6.15~6.30),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앞의 책, 220쪽.

46) USAFIK, G-2, ISNK, No.47(1947.10.15~10.30),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앞의 책, 463쪽.

47) 김일성, 「검찰, 보안기관 일군들의 당면임무」(1946.11.20), 『김일성전집』 4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404쪽.

48) 강만길·성대경 편, 앞의 책, 381쪽; 김중생, 앞의 책, 125쪽.

(Cha, Yung-Do)였는데, 그의 경력은 알 수 없다. 다만, 차영도의 형제인 차영길(Cha, Yung-Kil)이 북조선인민위원회 보안국 정보부 부장이었다. 주한미군이 파악한 인물정보에 따르면, 차영길은 소련군 대위였으며, 고려인(Soviet-Korean)이었다.⁴⁹⁾ 1947년 5월 18일자 주한미군 CIC 보고서에는 진남포에 있는 서해수상보안대대의 신임 사령관이 소련 해군에서 근무한 고려인이라고 보고되었다.⁵⁰⁾ 차영도는 소련 해군에서 근무했던 고려인임을 알 수 있다.

차영도의 후임으로 서해수상보안대대 대대장에 임명된 사람은 장지복(張之福·張志福)이다. 그는 1947년 10월 당시 서해수상보안대대 대대장이었다.⁵¹⁾ 장지복은 1938년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성자강릉분교를 졸업하였다. 1938년에 조선의용대에 참가했고, 1939년 봄 진국화와 함께 호남성 북부의 최전선에서 항일선전활동을 전개했다. 1942년부터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우수대원으로 활동했다. 해방 직후 만주로 진출했다가 1945년 말 조선의용군 1진으로 입북했다.⁵²⁾

해양경비부대의 지휘관은 다양한 경력자들로 구성되었다. 대장과 대대장 중 3명은 조선의용군출신, 1명은 고려인이었다. 이철중은 남경군관학교 11기생으로 진국화와 장지복이 중앙육군군관학교 성자강릉분교에 재학 중일 때 견습사관으로 근무했다. 진국화와 장지복은 중앙육군군관학교 동기생이자 1939년부터는 호남성 북부의 최전선에서 함께 항일선전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해방 이전에 군관학교와 조선의용대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인적관계를 맺은 인물들이었다. 조

49) USAFIK, G-2, ISNK, No.36(1947.5.1~5.15),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앞의 책, 48쪽; USAFIK, G-2, ISNK, No.39(1947.6.15~6.30),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앞의 책, 212쪽.

50) USAFIK, G-2, ISNK, No.39(1947.6.15~6.30),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앞의 책, 220쪽.

51) 서해수상보안대대장 장지복, 「영흥리호 전말보고서」(1947.10.7), 국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409쪽.

52) 김중생, 앞의 책, 125~126쪽; 강만길·성대경 편, 앞의 책, 419쪽.

선의용군출신은 해양에서 근무한 경력은 없었지만, 정규군관학교를 졸업했으므로 대원을 양성하고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군사적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있었다.

수상보안대대장은 주로 의용군출신이 맡았다. 이 같은 간부구성은 북한의 무력형성과정과 연관되어 있다. 해방 직후 북한 무력기관의 책임자는 모두 항일연군출신과 의용군출신이 임명되었다. 보병부대의 모체인 보안간부훈련소의 경우, 제1소 문화부소장 서철(徐哲), 제2소 소장 강건(姜健), 제3분소 분소장 최현(崔賢) 등은 모두 항일연군출신이었다.⁵³⁾ 평양학원은 항일연군출신이 창설을 주도했으며, 원장도 항일연군출신 김책(金策)이 맡았다.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는 항일연군출신과 의용군출신이 창설을 주도했으며, 정치부교장과 교무부장 등 핵심적인 자리에 모두 항일연군출신이 임명되었다.⁵⁴⁾ 철도경비대의 주요간부도 항일연군출신과 의용군출신이 맡았다.⁵⁵⁾

간부구성의 특징을 보면, 항일연군출신은 모든 무력기관에 성원을 파견했으며, 특히 장차 정규군의 근간이 될 고급군관양성기관과 보병부대에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반면에 의용군출신은 성원을 초급군관양성기관과 보안대·경비대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었다. 특히 1947년 1월에 들어서 보안무력의 지도기관인 보안국의 국장이 최용건(항일연군)에서 박일우(朴一禹, 의용군)로 교체된 것은 간부구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⁵⁶⁾ 의용군출신인 박일우가 보안무력을 책임지면서 내무국이 관할하는 보안무력에서 의용군출신의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었다.

북한에서 창설된 해양경비부대의 초기 병력은 매우 적었다. 1946년 11월 19일 현재 수상보안대원의 수는 총 111명이었다. 같은 시기

5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246쪽.

5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235~239쪽.

5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674쪽.

56) 박일우, 「보안기구비밀문서취급규정」(1947.2.1), 군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61쪽.

철도보안대원은 713명이었다.⁵⁷⁾ 수상보안대가 2개 부대였음을 감안하면, 한 부대당 55명 규모로 중대편제도 충족하지 못하였다. 1947년 4월 증편된 이후, 수상보안대대의 병력은 지방당원과 당간부의 추천에 의하여 모집되었다. 수상보안대대는 모집된 병력을 교도대에 배속하여 사상교육, 제식교련전투훈련, 사격술 등을 가르쳤다. 1947년 5월에는 수상보안대원을 200명에서 400명으로 증원하였다.⁵⁸⁾ 대대급으로 증편하면서 대원들을 충원한 것이다. 또한 북조선로동당은 해양경비부대의 병력을 증강하기 위해 당에 등록된 신병들을 별도로 수상보안대에 배치하였다.⁵⁹⁾

수상보안대의 간부들은 창설 초기에 평양학원과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의 졸업생 중에서 충원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해양경비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해양 근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했고, 이로 인해 수상보안대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1947년 4월 15일 김일성은 제25군 사령관 코로트코프 중장에게 수상보안대 간부들을 양성하기 위해 청진에 100여 명 규모의 “강습소”를 조직할 것과, 소련함대 장교들이 교육을 맡아줄 것을 요청하였다.⁶⁰⁾

김일성의 요청은 3개월 후 원산에서 결실을 보게 되었다. 1947년 7월 8일⁶¹⁾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원산에 300명을 정원으로서 “수상보안간부학교(水上保安幹部學校)”를 창설하였다.⁶²⁾ 이 학교는 ‘해군지휘간부’를 키워내기 위한 군중학교였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항

57) 北朝鮮人民保安局, 앞의 자료.

5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694쪽.

59) USAFIK, G-2, ISNK, No.39(1947.6.15~6.30),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앞의 책, 220쪽.

60) 「김일성이 코로트코프에게」 (1947.4.15), 기광서, 앞의 논문, 225쪽에서 재인용.

61) 창설일은 다음 자료를 참조하였다.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24권,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1, 127쪽.

62) 기광서, 앞의 논문, 225쪽.

해, 기관, 함상포, 해안포 등에 대한 전문기술을 가르쳤다.⁶³⁾ 수상보안간부학교는 해양과 항만에 대한 경비사업의 모태로 규정되었다. 1947년 11월 28일 김일성은 내무국 산하 책임자 및 정보과장회의에 참석해 “수상보안학교를 강화하며, 해항(海港)경비의 철저화를 위하여 그 사업의 모태가 되게 할 것”을 지시하였다.⁶⁴⁾

수상보안간부학교는 동해수상보안대대가 주둔하고 있던 원산에 설립되었다. 1947년 10월 중순 당시 교장은 조화철(Cho Hwa-Chol)이었다. 학생들은 소련 해군제복과 유사한 제복을 착용했고, 몇 명의 소형보트로 훈련을 받았다.⁶⁵⁾ 주한미군은 수상보안간부학교의 교육과정을 두 종류로 파악하고 있었다. 하나는 수상보안대에서 선발된 학생을 위한 6개월 과정이었고, 다른 하나는 내무국의 다른 부서와 시민 중에서 모집된 학생을 위한 3년 과정이었다. 수상보안간부학교의 교육은 내무국 경비처의 명령에 따라 실시되었다.⁶⁶⁾ 수상보안간부학교는 원산에 있다가 1947년 8월 하순에 강원도 문천군으로 이전했다.⁶⁷⁾

그러나 수상보안간부학교의 정확한 교육기간은 1년이다. 내무국은 1948년 6월 17일 각 도에 책임자를 파견하여 각 도인민위원회와 도내무부를 통해 수상보안간부학교 제2기생을 모집했다. 북조선로동당 간부부장 진반수(陳班秀)는 각 도당부 간부부장에게 공문을 보내 내무국에서 파견된 책임자를 도와 학생모집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⁶⁸⁾

63)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앞의 책, 127쪽.

64) 박일우, 「위원장 훈시 전달의 건」 (1947.12.21),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301~302쪽.

65) USAFIK, G-2, ISNK, No.46(1947.10.1~10.15),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앞의 책, 441쪽.

66) USAFIK, G-2, ISNK, No.47(1947.10.15~10.30),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앞의 책, 463쪽.

67) 1948년 1월 초순의 정보보고서에서도 수상보안간부학교의 위치가 여전히 문천으로 보고되었다. USAFIK, G-2, ISNK, No.47(1947.10.15~10.30),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앞의 책, 464쪽; USAFIK, G-2, *G-2 Weekly Summary*, No.122(1948.1.9~1.16), 『주한미군북한정보요약』 3,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89, 7쪽.

68) 진반수, 「수상보안간부학교(제2기생) 및 대원 모집협조에 관하여」 (1948.6.17), 『(절대비밀) 인민군대·내무성첩』, NARA, RG 242, SA 2006, Box 16, Item 46.

수상보안간부학교는 1947년 7월에 설립되었고, 1년이 지난 1948년 6월에 제2기 입학생을 모집했다. 학생들에 대한 모집요강은 내무국에서 작성했으며, 학생들은 각 도인민위원회와 노동당 지방당부를 통해 모집되었다.

학교의 교관으로는 해방 전에 상선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인 밑에서 선박기술자로 근무한 인물 등이 배치되었다.⁶⁹⁾ 수상보안간부학교는 학생들에게 항해, 기관, 함상포, 해안포 등에 대한 전문기술을 가르쳤다.⁷⁰⁾ 학생들은 주로 어부, 구 일본 해군출신, 상선 선원출신 등 해양과 관련된 일을 해온 사람들이었다. 학생들은 1~3개월동안 기초군사훈련, 소구경화기 사격술, 이론적인 선박 조종술, 신호와 라디오 등을 교육받았다. 졸업생들은 30~50명 단위로 수상보안대의 분대나 분견대에 배치되었다.⁷¹⁾

해양경비부대의 간부를 양성하는 기관은 수상보안간부학교 외에도 있었다. 1947년 7월까지 수상보안대대의 예하부대에는 각각 수상보안간부훈련소가 설치되었다. 서해수상보안대대 예하에는 용암포(평북), 진남포(평남), 해주(황해)에 수상보안간부훈련소가 설치되었고, 동해수상보안대대 예하에는 청진(함북), 흥남(함남), 원산(강원)에 수상보안간부훈련소가 설치되었다. 이 중에서 핵심적인 훈련소는 청진, 진남포, 원산에 있는 훈련소였다.⁷²⁾

원산에 있는 수상보안간부훈련소의 교장은 11월 말 당시 최중보(Tchei, Chong-Bo)였고, 훈련소의 학생은 290명이었다. 수상보안간부훈련소의 교관은 구 일본 해군 장교였던 20명의 조선인이 맡았다.

69) 김일 외, 『붉은 해발아래 창조와 건설의 40년』 1,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359쪽.

70)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앞의 책, 127쪽.

71) USAFIK, G-2, ISNK, No.39(1947.6.15~6.30),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주한미군북한정보요약』 2, 220쪽.

72) 훈련소의 이름이 “SooSangBoAnKanBoHulLyunSo”라고 기록되어 있다. USAFIK, G-2, ISNK, No.39(1947.6.15~6.30),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주한미군북한정보요약』 2, 218; 220쪽.

학교는 선박조종술·항법과, 해군기술과, 해군포격술과, 해군통신과 등 4개 학과로 구성되었다. 원산 수상보안간부훈련소의 학과는 수상보안간부학교의 학과보다 더 많았다. 학생들의 입학자격은 20~30세, 중학교 졸업 이상, 공산당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3~4년간의 해양 경력을 가진 자로 제한되었다. 학생들은 일본제무기로 무장하였고, 매일 교실강의와 군사훈련을 받았다. 교육과정은 6개월이었다.⁷³⁾ 속초에 위치한 훈련소는 훈련장비로 3척의 150마력 선박, 2척의 50톤 선박을 사용하였다. 훈련소의 졸업생들은 원산과 청진 등에 주둔한 각 수상보안부대에 배치되었다.⁷⁴⁾

1947년 7월에 해양경비부대의 간부를 양성하기 위해 수상보안간부학교가 창설되었지만, 이 학교는 11월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학교의 교관과 장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1947년 11월에 소련극동군 연해주군관구 사령관에게 보낸 전문에서 “7월에 조직된 수상보안간부학교에 군사고문관도, 모터보트를 포함한 장비들도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이 학교의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수상보안간부학교에 군사고문관 4~5명을 선발해 줄 것, 해안방어용 모터보트 약 40척을 북한에 판매할 것”을 요청하였다.⁷⁵⁾

수상보안간부학교에 그후 모터보트가 지원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소련 군사고문은 배치되었다. 1948년 3월 1일 현재 북한에 배치된 소련 군사고문은 총 379명으로, 이중 “수상보안대”에 배치된 고문은 4명이었다.⁷⁶⁾ 수상보안간부훈련소에도 소련군 장교가 배치되어 훈련을 지원하였다. 또한 원산·청진·진남포에 주둔

73) USAFIK, G-2, *ISNK*, No.49(1947.11.15~11.30),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주한미군북한정보요약』 2, 506쪽.

74) USAFIK, G-2, *G-2 Weekly Summary*, No.155(1948.8.27~9.3),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주한미군북한정보요약』 4,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89, 190쪽.

75) 기광서, 앞의 논문, 226~227쪽.

76) 기광서, 앞의 논문, 231쪽 각주 49번.

하고 있던 소련 해군의 병력들도 수상보안대의 대원들을 훈련시켰다. 그러나 보안간부훈련대대부(保安幹部訓練大隊部)나 보안간부훈련소에 적용된 소련 군사고문제도는 수상보안대에서 시행되지 않았다. 수상보안대는 북한의 보안무력 중에서 소련의 원조가 가장 부족한 부대였다.⁷⁷⁾

그렇다면 수상보안대대의 무장수준은 어떠했을까? 1947년 5월 현재, 원산에 본부를 둔 동해수상보안대대는 총 1,600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들은 일본제 소총과 권총으로 무장하였다. 동해수상보안대대는 38척의 선박(작동하지 않는 6척 포함)을 보유하고 있다. 일부는 일본제 모터보트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국산 선박이었다. 선박은 일본제 기관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⁷⁸⁾ 즉, 동해수상보안대대는 모두 일본제무기로 무장하고 있었고, 소련제 함정이나 선박은 한척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수상보안대대는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장비와 시설은 매우 열악했다. 1947년 11월 현재, 서해수상보안대대 남포수상보안대에는 7명의 감찰공작원이 있었는데, 이들이 보유한 권총은 겨우 2정이었다. 이 같은 상황은 다른 수상보안대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몽금포수상보안대와 구미포수상보안대에는 전화가 가설되어 있지 않아 서해안수상보안대대와 연락하는데 평균 2~3일씩 걸렸다. 해주수상보안대가 소유한 경비선은 해방 전에 사용하던 야기다마엔진(燒玉式)을 단 동선(動船, 중유사용)이었는데, 발동을 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긴급출동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해주수상보안대는 내무국에 모터보트(휘발유사용)를 비치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⁷⁹⁾

77) USAFIK, G-2, ISNK, No.39(1947.6.15~6.30),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주한미군북한정보요약』 2, 220쪽.

78) USAFIK, G-2, ISNK, No.36(1947.5.1~5.15),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주한미군북한정보요약』 2, 48쪽.

79) 내무부 보안처 감찰부, 「서해수상보안대대 검열보고」 (1947.11.24), 국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413쪽.

1947년 11월 24일 시점까지 동해수상보안대대와 서해수상보안대대는 모두 일본제무기와 일본제·국산 선박만 보유하고 있었고, 부대에는 개인화기와 경비전화마저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다. 즉, 해양경비부대에는 소련제 무기·장비가 거의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북한의 보병부대에는 1947년 초부터 소련제 무기·장비가 대대적으로 지급되었다. 소련은 1947년 초에 소련제무기를 진남포항을 통해 북한으로 들여왔다.⁸⁰⁾ 이후 북한의 보병부대에는 소련제 자동소총·경기관총·중기관총·박격포·대전차포 등이 지급되었다. 이로써 보안간부훈련대대부가 지휘하는 모든 부대는 소련제 무기·장비를 갖추게 되었다.⁸¹⁾

해양경비부대의 무기·장비가 보병부대에 비해 열악했던 이유는 군사지휘기관인 보안간부훈련대대부가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인 북조선인민위원회 보안국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창군사업은 대대부가 주도했으므로 소련제 무기·장비도 보병부대에 우선적으로 지급되었다. 해양경비부대는 창군사업이 아니라 경비업무에 투입되었으므로 소련제 무기·장비의 지급에서 후순위로 밀려났다. 북한정치세력은 이 같은 상황에서 과거에 정규군관학교를 졸업한 군사간부를 지휘관으로 배치하고, 북한 청년들을 모집해 해양과 항만을 경비하였다. 또한 그들은 소련으로부터 함정 등 해양 관련 무기·장비가 제공되지 않자, 먼저 수상보안간부학교를 설립함으로써 간부를 양성하는데 주력하였다.

80) 佐佐木春隆 著, 姜昶求 譯, 『韓國戰秘史』 中卷, 兵學社, 1977, 29쪽.

81)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 1, 고려원, 1990, 92쪽.

4. 해양경비부대의 지휘체계와 소련군·내무국· 검찰소의 갈등

해방 직후에 처음 조직된 수상경비대는 북조선행정10국 보안국이 관할했다. 1945년 11월 19일 행정10국 창설 당시 보안국은 5부 5과 체계였다. 보안국 경비부는 경비과와 수상과로 구성되었고, 이중 수상과가 수상경비대를 관할했다. 북조선행정10국은 1946년 2월 8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로 개편되었다. 임시인민위원회 보안국장에는 행정10국 보안국장 최용건이 유임되었다. 1946년 4월 1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보안국은 4부 12과 체계로 부서를 개편했다. 보안국 경비부는 경비과·철도과·수상과로 구성되었고, 수상과가 계속해서 수상경비대를 관할했다.⁸²⁾

북조선공산당은 1946년 8월 15일 군사최고지휘기구로 보안간부훈련대대부를 창설하였다.⁸³⁾ 대대부가 창설되자 보안국의 군사업무는 대부분 대대부로 이관되었고, 보안국은 경찰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다. 수상경비대(9월 이후 수상보안대)와 철도보안대·조만국경경비대·38경비보안대는 경찰의 보안무력으로 분류되어 계속해서 보안국이 관할하였다.⁸⁴⁾ 북조선로동당은 1947년 5월 17일 보안간부훈련대대부를 북조선인민집단군총사령부(이하 집단군총사령부)로 개편했다.⁸⁵⁾ 수상보안대에서 증편된 수상보안대대는 2월에 출범한 북조선인민위원회 내무국에서 관할했다. 내무국에서 수상보안대대를 관장하던 부서는 경비처 경비부 해안경비과였다.⁸⁶⁾

82) 김선호, 앞의 논문, 297~303쪽.

83) 장준익, 앞의 책, 53~54쪽.

84) 김선호, 앞의 논문, 306~307쪽.

8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91쪽.

86) 「북조선인민위원회 내무국 기구 및 사무분장」, 국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65쪽.

수상경비대·수상보안대·수상보안대대는 창설 당시부터 줄곧 중앙행정기관이 지휘하였다. 북한정치세력은 1946년 8월 15일 대대부를 창설하면서 보안무력을 두 가지 계통으로 분리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인 보안국은 각종 경비부대를 관할하면서 일상적인 경비활동을 수행하였다. 이와 달리 군사지휘기관인 대대부는 보안간부훈련소를 관할하면서 창군사업을 담당하였다. 해양경비부대는 이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보안국·내무국의 지휘 아래 동해안과 서해안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해양문제를 담당하였다.

수상경비대·수상보안대의 행정업무는 보안국 경비부 수상과에서 관장했으며, 수상보안대대의 행정업무는 내무국 경비처 경비부 해상경비과에서 관장하였다. 그러나 주요사안은 수상보안대대장이 담당부처를 거치지 않고 내무국장에게 직접 공문을 상신하였다.⁸⁷⁾ 수상보안대대의 사업은 내무국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열받았다. 예를 들어, 내무국 보안처 감찰부 감찰과는 1947년 11월 수상보안대대의 각 중대를 검열하였다.⁸⁸⁾ 수상보안대대의 각 부서장은 내무국의 정기회의에 참석해 사업결과를 보고하고 내무국의 지시를 하달받았다. 1947년 12월 21일 서해수상보안대대 감찰과장은 “제2회 각도 및 특별시·철도·수상 감찰과장회의”에 참석했다.⁸⁹⁾

해양경비부대와 달리 수상보안간부학교의 모든 사업은 내무국 경비처 간부부가 직접 주관하였다. 경비처 간부부는 수상보안간부학교의 단기강습 및 훈련사업을 담당했다. 내무국은 수상보안간부학교의 사업계획·집행정형·사업총결을 내무국 간부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교육방침을 사상적·조직적으로 통일하였다.⁹⁰⁾ 이

87) 서해수상보안대대장 장지복, 「영흥리호 몰수전말보고서」(1947.10.7), 국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409쪽.

88) 내무국 보안처 감찰부, 「서해수상보안대대 검열보고」(1947.11.24), 국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413쪽.

89) 「제2회 감찰과장회의록」(1947.12.21), 국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292쪽.

90) 박일우, 「幹部事業分掌에 對하여」(1948.7.29), 『幹部事業規程』, 내무성 간부처,

와 같이 해양경비부대와 수상보안간부학교의 사업은 창설 당시부터 1947년까지 중앙행정기관에서 직접 관할하였다. 내무국은 각 부처와 정기회의를 통해 해양경비부대의 사업을 지도하였다.

그런데 해양경비부대의 지휘체계는 부대의 창설과정에서 소련 군·행정기관·사법기관 사이에 상호 충돌하였다. 갈등의 시작은 보안국의 조직체계 때문이었다. 앞에서 확인했듯, 보안국은 설립 이후 기구와 조직이 6회나 변경되었다. 보안국은 창설1주년 총결보고에서 보안사업의 첫 번째 단점으로 “기구·조직 변경이 자른 것”을 들었다. 보안국의 불완전한 조직체계는 관할하던 경비부대의 명령계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즉, 빈번한 조직체계 변경은 “하급기관에게 명령계통의 혼란을 주었고, 간부 이동이 빈번해 불완전성을 주었다.” 확립되지 않은 명령계통의 문제점은 해양경비부대에서도 나타났다. 보안국은 수상보안대가 조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출입에 대한 증명을 육상의 보안기관에서 취급하라고 지시해 하급기관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⁹¹⁾

해양경비부대에 대한 지휘체계는 북조선인민위원회 내무국시기에 들어와 정리되었다. 수상보안대대는 크게 두 가지 지휘계통에 의해 통제되었다. 수상보안대대의 예하 중대인 수상보안대는 지방인민위원회 내무부와 수상보안대대라는 두 계통으로부터 통제받았다. 수상보안대의 작전통제권은 서해수상보안대대와 동해수상보안대대가 보유했다. 이것은 해안감시지역의 순찰 등을 포함한 작전통제권과 본질적으로 해양에 관련된 사항이다. 수상보안대의 법률집행권은 지방인민위원회 내무부가 보유했다. 이것은 체포한 밀수자와 선박의 처리 등 본질적으로 경찰에 관련된 사항이다.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통제는 평양에 있는 내무국이 맡았다.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수상보안

1949.1.12, NARA, RG 242, SA 2006, Box 16, Item 48.

91) 北朝鮮人民保安局, 앞의 자료.

대대의 지휘계통을 두 가지로 분리한 것은 해양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조치였다. 예를 들어, 12마일 한계를 넘는 해양작전은 지방차원의 작전권 문제를 넘어서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책임을 분할해 수상보안대대에 작전통제권을 부여하고 지방인민위원회에 법률집행권을 부여함으로써 국제적 문제의 발생을 차단한 것이다.⁹²⁾

그러나 해양경비부대에 대한 지휘체계는 내무국시기에도 완전히 통일되지 못했다. 지휘체계를 둘러싸고 갈등한 주체는 소련군 지방 특무사령부, 수상보안대대, 지방검찰소였다. 해양경비부대가 활동할 당시, 각 해안지역에는 제25군사령부의 지휘를 받는 특무사령부와 북조선검찰소가 관할하는 지방검찰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특무사령부는 위수지역에 대한 정치적·군사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지방검찰소는 형사·민사사건에 대한 취급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갈등은 주로 해양사건의 취급과정에서 발생한 압수품·몰수품을 둘러싸고 발생하였다.

대표적인 갈등의 사례는 1947년에 황해도 장연군에서 발생한 “중국선박 영흥리호(永興利號) 적재품 불법몰수사건”이다. 서해수상보안대대가 관할하는 몽금포수상보안대는 1947년 10월 1일 관할지역에서 중국선박 영흥리호(大連 소재)와 선원 6명을 체포하고, 이 사실을 장연군의 검찰소와 “소련특무사령부”에 보고하였다. 소련군 특무사령관은 즉시 임검(臨檢)을 실시했는데, 이때 중국선박에 실려있던 양복천을 위수사령부로 무단 반출하였다.⁹³⁾ 특무사령부 부장 “뿌로끄벤코”(Фурокпенко) 대위는 10월 5일 몽금포수상보안대장에게 “도사령부”의 지시를 공문으로 발송하였다. 장연군 특무사령부는

92) USAFIK, G-2, ISNK, No.43(1947.8.15~8.31),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주한미군북한정보요약』 2, 352쪽.

93) 서해수상보안대대장 장지복, 『영흥리호 몰수전말보고서』 (1947.10.7), 국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409쪽.

몽금포수상보안대가 억류중인 영흥리호를 소련군 중위에게 인계하고, 10월 6일 평양으로 출항시켜줄 것을 요청하였다. 평양의 소련군사령부는 이 선박을 소련군 병원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와 함께 장연군 검찰소는 10월 5일 수상보안대에 영흥리호 몰수사건과 관련된 증명서 일체를 자신들에게 반환하라고 지시하였다.⁹⁴⁾

사건의 경위를 보면, 소련군사령부와 지방검찰소는 영흥리호사건의 처리에 직접 개입하였다. 주도적으로 개입한 주체는 소련군사령부였다. 장연군의 특무사령부는 선박을 임검하고 물품을 반출했으며, 이 사건을 황해도사령부에 보고하였다. 황해도사령부는 제25군사령부에 이 사건을 보고했고, 제25군사령부는 압수한 선박을 소련군병원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중요한 점은 서해수상보안대대장이 이같은 소련군사령부의 개입을 “불법행위”라고 보고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소련군사령부의 불법행위로 인해 중국인들에게 “북조선내무기관의 위신”이 떨어지므로 이후 사업에 큰 지장을 준다고 내무국장에게 보고하였다.⁹⁵⁾

내무국은 수상보안대대와 검찰기관의 지휘체계문제에 대해 이미 1947년 9월 10일에 내무국 보안처 지시 「北內保護 제275호」를 하달한 바 있었다. 내무국은 이 공문에서 검찰기관의 지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수상보안대대는 여전히 검찰기관의 지시를 받고 있었다.⁹⁶⁾ 이 같은 상황에서 영흥리호사건이 발생하자, 서해수상보안대대장 장지복은 10월 20일에 이 사건을 내무국장에게 직접 보고하였다. 그는 소련군특무사령부의 몰수품 인계 명령이 내무국 지시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군검찰소와 소련사령부에서 간섭

94) 長淵郡蘇聯司司令部長 大尉 뽀로끄뽀꼬, 長淵郡검찰소 장명석, 「夢金浦水上保安隊長 貴下」(1947.10.5), 국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410쪽.

95) 서해수상보안대대장 장지복, 「영흥리호 몰수전말보고서」(1947.10.7), 국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409쪽.

96) 내무국 보안처 감찰부, 「서해수상보안대대 검열보고」(1947.11.24), 국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412쪽.

하여 오는 현상”이 향후 사업의 진행에 지장이 크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중앙소련군사령부로부터의 지시여부와 북조선검찰소로부터의 지시여부를 조사하여 소련사령부 및 검찰기관과의 사무적 한계를 명확히 분별해 주고, 본 건 또한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할지 속히 지시를 줄 것”을 요청하였다.⁹⁷⁾

내무국의 문서를 보면, 몽금포수상보안대가 나포한 중국선박은 내무국장에게 공문이 상신되기 이전에 이미 장연군의 소련군특무사령부로 인계된 상태였다. 서해수상보안대대의 보고를 접수한 내무국 보안처 감찰부는 서해수상보안대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휘체계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직접 감찰과원을 파견하였다. 내무국 감찰부는 서해안수상보안대 감찰과원과 함께 11월 13~22일까지 각 중대를 감찰하고 지휘체계문제를 처리하였다. 감찰부는 11월 24일 장연군의 소련군특무사령부가 중국선박을 취급한 사건에 관한 일체의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당시 특무사령부가 중국선박에서 압수한 물품은 내무국에 운반하라고 지시하였다.⁹⁸⁾ 즉, 내무국은 소련군사령부의 개입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정식으로 조사에 착수했고, 이들이 반출한 물품을 회수하였다.

영흥리호사건 이후 수상보안대에 대한 지휘체계의 현황은 1947년 11월 15일 현재 서해수상보안대대의 압수·몰수취급사건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97) 서해수상보안대대장 장지복, 「중국선박 영흥리호에 대한 처리의 건」(1947.10.20), 국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408쪽.

98) 내무국 보안처 감찰부, 「서해수상보안대대 검열보고」(1947.11.24), 국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414쪽.

<표> 서해수상보안대대 압수·취급사건 현황(1947년 11월 15일)⁹⁹⁾

부대명	압수·몰수 취급사건수	처리결과		비고
		사건 처리중	이관	
서해대대	15	15	0	
남포대	28	13	15	서해대대에 15건 이관함
몽금포대	19	0	19	검찰소에 6건, 무역소에 12건, 재판소에 1건 이관함
구미포대	13	2	11	검찰소에 3건, 무역소에 8건 이관함
해주대	57	25	32	검찰소에 30건, 검찰소 지시에 의하여 2건을 본인에게 반환함
합계	132	55	77	

1947년 11월 15일까지 서해수상보안대대와 예하의 수상보안대에서 취급한 압수·몰수사건은 총 132건이었다. 부대에서 처리중인 사건은 55건, 이관된 사건은 77건이었다. 이중 38건과 가까운 해주 수상보안중대에서 가장 많은 압수·몰수사건을 취급했다. 수상보안중대에서 취급하기 어려운 사건들은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었다. 사건은 상급부대인 서해수상보안대대로 이관하기도 하였다. 남포수상보안중대는 15건을 서해수상보안대대에 이관했는데, 서해수상보안대대가 처리중인 사건은 이 15건이 전부였다. 따라서 서해수상보안대대에서는 직접 압수·몰수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이관된 사건만 처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수상보안대가 취급한 압수·몰수사건 중에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은 검찰소와 재판소로 이관되었고, 압수품·몰수품 중에서 양도나 거래가 필요한 사건은 무역소로 이관되었다.

수상보안대에서 적발한 132건의 압수·몰수사건 중에서 다른 기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 사건은 2건이었다. 해주보안대는 해주검찰소에 총 32건을 이관했는데, 이중 해주검찰소의 지시에 따라 2건

99) 내무국 보안처 감찰부, 「서해수상보안대대 검열보고」(1947.11.24), 국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414쪽.

의 압수품·몰수품을 본인에게 반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해주 보안대가 해양사건에 관해 해주검찰소의 지휘를 받은 것이 아니라 보안대에서 처리해 이관한 사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집행한 것이다. 또한 서해수상보안대대가 처리한 사건 중에는 소련군특무사령부로 이관한 사건이 전혀 없었다.

지휘체계의 갈등은 사실 각 기관별 사업권한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내무국은 수상보안대대가 문제를 제기하자, 소련군 제25군사령부·북조선검찰소와 사업권한을 협의했을 것이다. 1947년 말부터 내무국의 회의자료에는 더 이상 지휘체계문제가 등장하지 않는다. 내무국의 공식 지시가 하달되고 북조선인민위원회 업무가 정비되면서 내무국 직속의 지휘체계가 점차 확립된 것으로 보인다. 지휘체계의 갈등은 1947년 10월 시점에도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사업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반면에 내무국이 소련군특무사령부가 압수한 물품을 공식적으로 회수할 수 있었던 것은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정치적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1947년에 수상보안대대에서 발생한 지휘체계의 갈등은 북한의 정치적·군사적 권력이 소련군사령부에서 점차 북조선인민위원회로 이양되던 역사적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5. 맺음말

북한정치세력은 1946년 6월에 미군정이 조선해안경비대를 창설하자 이에 대응해 해양경비부대를 창설하였다. 북한지역에서 최초로 창설된 해양경비부대는 수상경비대였다. 서해수상경비대는 1946년 6월에 창설되었고, 동해수상경비대는 7~8월에 창설되었다. 그리고

수상경비대의 명칭은 9월에 수상보안대로 개칭되었다. 2개 수상보안대는 1947년 4월에 각각 서해수상보안대대와 동해수상보안대대로 증편되었다. 해양경비부대의 지휘관은 대부분 정규군관학교를 졸업한 조선의용군출신이 맡았다.

해양경비부대는 북조선인민위원회가 관할했다. 수상보안대의 작전 통제권은 수상보안대대가 보유하고, 법률집행권은 지방인민위원회 내무부가 보유했다. 그러나 해양경비부대의 지휘체계는 소련군·행정기관·사법기관 사이에 상호 충돌하였다. 소련군사령부와 북조선 검찰소는 수상보안대대의 업무에 직접 개입하였다. 내무국은 소련군사령부의 개입 사실을 직접 조사했으며, 소련군사령부가 반출한 물품을 회수하였다. 1947년에 수상보안대대에서 발생한 지휘체계의 갈등은 북한의 정치적·군사적 권력이 소련군사령부에서 점차 북조선인민위원회로 이양되던 양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북한의 해양경비부대는 남한의 조선해안경비대와 비슷한 시기에 창설되었다. 그러나 부대규모는 남한의 해안경비대가 압도적으로 컸다. 1946년 11월 19일 당시 수상보안대의 총병력이 111명이었던데 비해, 남한의 해안경비대는 1946년 11월 30일 당시 1,191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다.¹⁰⁰⁾ 조선해안경비대가 이처럼 급속히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군정의 군사지원 때문이다. 미군정은 1946년 9월 1일 수석고문관 맥케이브(George E. McCabe) 등 15명으로 구성된 군사고문단을 조선해안경비대에 배치하였다. 해안경비대는 군사고문단의 협조를 얻어 9월 15일에 미 해군으로부터 상륙정(LCI) 2척과 디젤함·증기함을 인수해 본격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¹⁰¹⁾

소련은 미국에 비해 해양경비부대의 창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다. 북한의 수상보안대에는 남한의 해안경비대와 달리 처음에 군사고문이 배치되지 않았고, 함정도 없었다. 소련 군사고문은 1947년

10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357쪽.

10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355쪽.

4월 수상보안대대가 창설되면서 처음 배치되었지만, 인원은 4명에 불과했다. 수상보안대대는 1947년 11월 24일 시점까지 일본제무기와 일본제·국산 선박만 보유하고 있었고, 소련제 무기·장비를 보유하지 못했다. 또한 수상보안간부학교에도 1947년 11월까지 소련 군사고문이 배치되지 않았다. 북한의 해양경비부대는 소련의 군사지원이 지연되면서 전력을 확장하지 못했다.

해양경비부대는 북한 해군의 역사적 기원이었지만, 1946년 8월에 보안간부훈련대대부가 설립되면서 인민군 창설과정에서 분리되었다. 보안국의 군사업무는 대대부로 이관되었고, 이후 인민군 창설과정은 대대부가 전담했다. 중앙행정기관의 군사담당부서는 1947년 2월 22일에 북조선인민위원회 내무국이 설립되면서 공식적으로 사라졌다. 이로써 인민군은 중앙행정기관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창설되기 시작했다. 반면에 북한의 해양경비부대는 대대부 중심의 창군계획과 소련의 미약한 군사지원으로 인해 창군과정에서 분리되어 내무국이 관할하는 경비부대로 남게 되었다. 그 결과 북한 해군의 창설은 대대부에 의해 육성된 육군에 비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원고투고일 : 2018. 6. 19, 심사수정일 : 2018. 8. 7, 게재확정일 : 2018. 8. 16)

주제어 : 조선인민군, 북한 해군, 수상보안간부학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보안국, 북조선인민위원회 내무국, 소련군사령부, 북조선검찰소, 조선해안경비대, 김일성, 박일우

<참 고 문 헌>

- 『(절대비밀) 인민군대·내무성철』, 민족보위성, 1950.6, NARA, RG 242, SA 2006, Box 16, Item 46
- 『幹部事業規程』, 내무성 간부처, 1949.1.12, NARA, RG 242, SA 2006, Box 16, Item 48
- 강만길·성대경 편, 『사회주의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1996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9권, 국사편찬위원회, 1990
- 기광서, 「북한 무력 형성과 북소관계」, 『中蘇研究』 28권 3호(2004): 215-235, <http://uci.or.kr/G704-000471.2004.28.3.004>
- 김광수, 「한국전쟁 초기 북한군의 지휘구조와 후방부대 편성」, 『육사논문집』 59집, 육군사관학교, 2003
- 김광수,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수행 연구』, 경남대 북한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8
- 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 1, 선인, 2003
- 김선호, 「해방직후 북한 보안국의 조직과 활동」, 『역사와현실』 86호(2012): 293-324, <http://uci.or.kr/G704-000054.2012..86.008>
- 김용현, 「북한인민군대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4
- 김일 외, 『붉은 해발아래 창조와 건설의 40년』 1,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김일성, 『김일성전집』 3·4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명지출판사, 2000
- 백기인, 『建軍史』,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 北朝鮮人民保安局, 『北朝鮮保安事業總結報告』, 北朝鮮人民保安局, 1946.11.19, NARA, RG 242, SA 2010, Box 미상, Item 150
-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24권,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1
- 임종국, 『日本軍의 朝鮮侵略史』 2, 일월서각, 1989
-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서문당, 1991

- 朝鮮中央通信社, 『朝鮮中央年鑑(1949年版)』, 朝鮮中央通信社, 1949
佐佐木春隆 著, 姜昶求 譯, 『韓國戰秘史』 中卷, 兵學社, 1977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 1, 고려원, 1990
최완규, 『조선인민군의 형성과 발전』, 『북한체제의 수립과정』,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1991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주한미군북한정보요약』 2·3·4, 한림대 아시아
문화연구소, 1989

<Abstract>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the North Korean Maritime Security Forces: Focusing on the Origins and early Officers of the North Korean Navy

Kim, Seon-ho

The Maritime Security Forces(MSF) that were first established in North Korea were the Coastal Guard. The West Sea Coastal Guard was established in June 1946, and the East Sea Coastal Guard was established in July and August. And the name of the coastal guard was renamed as coast security forces in September. In April 1947, the coast security forces base was expanded to include the West Sea Coast Security Battalion(CSB) and the East Sea CSB. The main mission of the MSF was to guard of coastal area, to stop smuggling and to secure secret passage. Most of the commanders of the marine security forces were from the Korean Volunteer Army group, who graduated from regular military schools. On July 8, 1947, the North Korean political forces established a coast security officer school in Wonsan.

The MSF wer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However, the MSF command system collided with each other between the Soviet army, administrative and judicial agencies. The Soviet Military Command and the North Korean Prosecutor's Office directly intervened in the work of the CSB. The CSB considered such intervention to be illegal and reported the intervention to the Interior Bureau. The Interior Bureau directly investigated the intervention of the Soviet Military Command and recovered the items exported by the Soviet Military Command. In

addition, the Interior Bureau instructed the CSB not to take orders from the Prosecutors' Office. After that, the command of the MSF was taken over by the Interior Bureau.

The North Korean MSF were established at a time similar to that of the South Korean Coastal Guard(SKCG), but the SKCG was overwhelmingly large. It was because the US military government actively supported the expansion of the SKCG. The Soviet Union did not actively support the creation of MSF as compared to the United States. Only a small number of Soviet military advisers were stationed in North Korean MSF, and there were no Soviet weapons and equipments. The MSF were unable to expand their power because the Soviet military support was delayed. As a result, the North Korean MSF were separated from the military establishment process and remained as security forces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Also, the creation of the North Korean Navy was delayed.

Key words : Korean People's Army, North Korean Navy, Coast Security Officer School, North Korean Provisional People's Committee, North Korean People's Committee, Soviet Military Command, North Korean Prosecutor's Office, Korean Coast Guard, Kim Il-Sung, Park Il-Woo